##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4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 민형배·김민철·김철민

안규백 • 우원식 • 이병훈

이용빈 · 이정문 · 주철현

홍성국 · 홍익표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에 관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할히 지원함으로써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.

한편,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·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,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조). 법률 제 호

##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국민경제의"를 "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기술보증기	제1조(목적)
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	
정착·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	
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	
하게 하고 나아가 <u>국민경제의</u>	<u>지역균형개</u>
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	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
한다.	